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|
| 의안 번호 | 2253 | [울산광역시 중구 중·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] 심사보고서 |
|----------|------|--|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2.(목) 홍영진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6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(홍영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시장의 참여 희망 연령도 다양화되지만 중·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취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 등 타 연령에 비해 부족한 현실
- 울산광역시 중구 중·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알선, 사회공헌활동, 여가 활동 등 중·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0조)
-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 ~ 안 제12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3조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5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조례안은 중·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발굴과 알선, 사회공헌활동, 여가활동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노후준비 지원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·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고용정책 기본법

제25조 (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) ① 국가는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,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,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, 관련 법령의 정비,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청년·여성·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